

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8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. 29.

발의자 : 황주홍 · 박주현 · 김중로

장병완 · 이찬열 · 윤영석

정동영 · 안민석 · 김종회

최도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국방부에서는 「군인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을 입법예고 하였음.

이에 따르면 전 군의 ‘현병’ 병과 명칭은 일제시대 잔재이며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국방개혁 2.0과 연계한 현병 개혁의 일환으로 현병작전, 수사, 사고예방, 경호경비 등을 모두 표현하는 의미인 ‘군사경찰’ 병과로 개정할 예정임.

이에 「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의 ‘현병’을 ‘군사경찰’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89조, 제105조, 제117조).

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제4항 본문 중 “현병대나”를 “군사경찰대나”로 한다.

제105조제2항 본문 중 “현병병과”를 “군사경찰병과”로 한다.

제117조제1호 본문 중 “현병대나”를 “군사경찰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9조(재난 시의 조치) ① · ② · ③ (생 략) ④ 제3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 시설 또는 <u>현병대나</u>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.	제89조(재난 시의 조치) ① ·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<u>군사경찰대나</u> ----- -----.
제10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 ② 위원장은 교도소의 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장이 군법무관, <u>현 병병과</u> 장교,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 ③ (생 략)	제10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, <u>군 사경찰병과</u> ----- ----- -----.
제117조(출석의무의 위반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군수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1. 정당한 사유 없이 제8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일시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군교정시설 또는 <u>현병대나</u> 경찰관서에 출석하	제117조(출석의무의 위반 등)--- ----- ----- ----- --. 1. ----- ----- ----- --- <u>군사경찰대나</u> -----

지 아니하는 행위 2 (생략)	----- 2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